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강원도 조례(안전 분야)에 대한 분석과 제안

2021. 9. 10.

연구수행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강원도 조례(안전 분야)에 대한 분석과 제안

2021. 9. 10.

연구수행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이윤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 연구원	최혜영(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연구 보조원	송정은(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규칙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자치법규의 증대로 자치법규가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원도의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존재함.
- 전통적으로 젠더중립적인 분야로 인식되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성별 특성에 따른 영향이 최근 인지되고 있는 안전 분야에 대하여 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2.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대상 조례의 선정기준

- 2021. 5. 20.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중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자치법규를 수집하며, 안전 분야에 한정하여 강원도 자치법규 중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분야에 편제되어 있는 자치법규만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함
- 해당 137개의 자치법규 중 94개 조례를 중심으로 2020 성별영향평가 지침상의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의거 분석평가를 실시함
- 해당 분야의 성평등 목표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논문 등 연구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젠더 이슈를 파악한 후 시행 중인 대상 조례에 대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의 지표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분석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 분석하여 개정, 제정의 개선안 도출에 참고함

II. 분야별 대상 조례의 분석

1. 재난안전 분야 조례의 분석

- 재난안전 분야에서 총 21개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젠더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야의 특성상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항목과 관련한 개선과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재난취약성이 인정되는 이유로 성별 특성에 관한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음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에서 재난안전의 관리체계의 설계단계

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고,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에서는 안전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재난에 취약한 여성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한 점이 지적되었음

-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에서는 화재안전 시설의 개선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화재사고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등에 대한 고려가 누락된 점이 발견되었고,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민의 의식개선과 책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성별균형 참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조례 4개와 성별 분리 조사가 필요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개선 대상 조례 3개를 발견하였음

2. 건설교통 분야 조례의 분석

- 건설교통 분야에서 총 84개의 자치법규 중 58개의 조례에 대해 접근성과 이동성, 공간성 및 편의성, 안전성, 여성참여 등 해당분야의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7가지 주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도시계획 및 공간조성 기본방향에 공간 조성 관련 성평등 이슈 반영할 조례 1개와 성별특성을 포함하여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 건설, 공간조성 관련 계획 수립 및 설계가 필요한 자치법규 10개, 도시공간 조성시 성별특성 및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조례 2개, 성평등하고 안전한 고용환경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조례 4개, 공간조성시 안전성 고려 강화 및 성별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수립 필요한 조례 1개, 공간활용시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례 1개를 발견하였고, 이동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조례 2개와 보행 비율이 높은 여성, 아동, 노인들의 보행권 보호를 위하여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의 부재를 발견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도민의 보행안전에 관한 신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고 조례안을 도출하였으며,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의 편의를 위한 개선과제 1개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지원책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 1개를 발견하였음
- 건설교통 분야 조례에서 성별균형 참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조례 10개와 성별 분리 조사가 필요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개선 대상 조례 1개를 발견하였음

3. 소방 분야 조례의 분석

- 소방 분야에서 총 14개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던 소방행정예의 여성 소방공무원의 진출에 따라 채용 또는 용어사용에서 성별 구분

- 및 성별 고정관념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조례가 2개 발견되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개선과제가 발견되었음
-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2개의 조례에서, 성별통계와 관련하여 1개의 조례에서 개선 필요성이 발견되었음

Ⅲ. 결론 및 제언

-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3개 분야의 자치법규 특히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행 중인 총 49개 조례에 대하여 신규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 등의 개선을 제안하고, 1개의 신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법적 근거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제2장 성별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및 분석 기준	7
제1절 대상 조례의 수집, 선별과 분류	7
제2절 대상 조례의 분석 기준	9
1. 평가항목	9
2. 성평등 목표	11
제3장 분야별 대상 조례의 분석	14
제1절 재난안전	14
1. 개괄	14
2. 재난안전 분야의 성평등 목표	15
3.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대상 조례의 분석	19
제2절 건설교통	31
1. 개괄	31
2. 건설교통 분야의 성평등 목표	33
3.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대상 조례의 분석	39
제3절 소방	80
1. 개괄	80
2. 소방 분야의 성평등 목표	82
3.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대상 조례의 분석	83

제4장 결론 및 제언	90
<참고문헌>	92
<별지1> 분석 대상 자치법규 목록	93
<별지2> 개선 대상 조례 목록	98
<별지3> 제정 제안 조례의 참고용 타 지자체 조례	10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법적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는 2002. 12. 11. 법률 제6770호로 개정된 구「여성발전기본법」(현 「양성평등기본법」¹⁾)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 2002. 12. 11. 법률 제6770호로 개정된 구「여성발전기본법」은 제10조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으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정책에 한정되었음
- 그러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구「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만 있어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현 「성별영향평가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6호로 제정되었음
- 2011. 9. 15. 제정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현 「성별영향평가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구 체적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면서 그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성

1) 2014. 5. 28. 「여성발전 기본법」이 법률 제12698호로 전부개정되어 법률제명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음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으로 정하여 법령에 까지 대상을 확대하고(제5조), 분석평가기준에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성별 수해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을 포함시켰음

- 이와 같은 발전에도 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현 「성별영향평가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4. 3. 24. 법률 제12530호로 개정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현 「성별영향평가법」)은 시행 중인 법령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제1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2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2016. 12. 20. 법률 제14443호로 개정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현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시행 중인 조례·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여(제10조의2 신설)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명시하였음
-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18. 3. 27 개정으로 제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같이 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은 2018. 9. 28.부터 시행중임
- 2018. 3. 27 개정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규칙 등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

가를 실시할 수 있고, 제4항에서는 이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률의 근거에 따라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커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법규의 규율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데에 자치법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영에 비추어 현행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존재함
- 무엇보다 자치법규는 지역 현안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입안과정에서 지역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성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 발표 지역성평등보고서 상 강원도는 성평등 수준이 중하위지역(Level-3)에 해당하는데 2014년에는 상위권에 속해있었지만 2015년 중상위권으로, 2018년 다시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후 계속 중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음²⁾
- 강원도의 성평등수준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되었고, 2014년과 비교하여 영역별로 성평등 수준은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개선되었으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9위에서 11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1위에서 9위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11위에서 15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음
- 분야별로는 경제활동과 복지 분야가 상위권이나 교육·직업훈련,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가 하위권에 해당하고, 특히 안전 분야는 2014년에는 3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분야임에도 지속적으로 그 순위가 하락하여 2019년 14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2)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 발표 지역성평등보고서 113면 이하

순위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또한 2014년 이후 지속해서 순위가 하락하여 2019년 11위를 기록하였음
- 이와 같은 강원도의 지역성평등지수, 강원도의 지리, 산업 및 경제구조, 인구연령분포의 특성상 성차별적 요소가 자치법규 입안 시 개입될 요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등한 강원도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강원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있음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강원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에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추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
-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구체적인 조례 정비방안을 도출·제안함으로써, 현행 조례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 정비를 통한 조례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정책에 있어서 성평등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강원도의 전체 자치법규를 분석평가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양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일부 분야의 조례를 한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함

-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중요한 분야이면서도 성평등지수에서 낮은 순위에 해당하는 안전분야의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분야는 주민들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분야임
- 최근 지진, 태풍, 호우, 황사 등의 자연재난이나 화재,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회재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안전과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협받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대한 법제의 검토 및 정비가 중요하고, 재난 관련 법제 역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체계상으로도 재난안전 관련 정책은 국민안전처의 총괄하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의하고 자치법규는 이 법령 위임에 따라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정되고 있음에 그쳐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입법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건설교통 분야 역시 젠더중립적인 분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건물 및 도시공간의 활용과 배치에서의 여성친화성이나 여성과 아동의 교통 편의성과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건설교통 분야의 법과 제도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음
- 젠더중립적인 용어와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던 분야의 법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단순히 수량적 성평등, 형식적 성평등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에 본 연구는 안전 이슈와 관련된 강원도의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분야의 조례에 대하여 내재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과 이러한 개념이 내포된 용어의 사용 등을 검토하고,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

계 등 항목에서의 검토와 함께 나아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반영한 개선 방향을 탐구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개선안 대비표 또는 제정필요가 있는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안의 도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분야는 해당 분야의 특성상 전국적인 규제 기준이나 표준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 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없음
- 이처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입법인 경우가 많은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분야의 조례의 특성상 이러한 법체계상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법령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개선안의 도출에 유의하고자 함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021년 5월 20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시행 중인 강원도 자치법규 중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조례를 수집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되, 연구기간 중에 해당 분야에서 제정된 조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조례, 규칙 등 조례 외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평가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함
- 연구방법은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분야의 젠더 이슈를 파악한 후 강원도의 해당 분야 평가 대상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수집·분석하고, 대상 분야별 국내외 각종 통계·연구자료 및 관련 문헌도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를 분석평가 근거로 제시함.
-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세밀한 분석과 실효적인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하여 대상 분야의 전문가, 관련 법학자, 여성정책 전문가 등과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함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등 항목에 따라 대상 조례의 전반적인 스크린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조례에 대하여는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경우 입법에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시함
- 현행 조례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현행·개선안 대비표 마련하는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제2장 성별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및 분석기준

제1절 대상 조례 수집, 선별과 분류

- 대상 조례는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하여 수집하고, 제·개정 연혁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자치법규 검색 내용을 참조함
- 대상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강원도 본청의 자치법규로 검색하여 수집된 강원도 자치법규 중 제4편 재난안전, 제13편 건설교통, 제15편 소방 분야에 속하는 자치법규 중 조례를 수집함
- 대상 조례의 수집기준일은 원칙적으로 2021년 5월 20일이고, 이 기준일 당시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기준일 이후 제·개정된 조례로서 평가 및 분석의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연구 내용에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추가함
- 위와 같이 수집된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분야 조례의 분야별 자치법규 및 분석 대상 조례의 목록은 별지 1과 같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평가 대상 분야별 자치법규 및 분석 대상 조례의 수>

분야		전체 자치법규 수	분석 대상 조례
재난안전	재난예방	8	7
	재난대응	10	7
	재난복구	3	1
	비상기획	9	6
건설교통	지역도시	15	10
	건축	30	21
	토지	10	6
	도로	9	4
	교통	17	15
	치수, 도시재생, 철도과	4	3
소방	소방행정	5	2
	예방안전	6	6

	방호구조	7	5
	소방장비회계, 종합상황실, 특수구조	4	1
계	종합	137	94

- 대상 조례 전체에 대하여 성평등 부합성 여부 등을 개략적인 분석하고 심층검토 방향 및 심층평가 대상 조례를 발굴함
- 해당 분야의 성평등 목표를 확인하고 사회, 문화, 신체적 성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개선 방향 수립하며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등 평가 지표 항목에 의거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심층적 조항분석함

제2절 대상 조례의 분석 기준

1. 평가항목

- 2020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성별영향평가 지표(아래 표)에 의거하여 평가 항목을 점검함

<성별영향평가 지표>

항목	점검 포인트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조례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 여부 1-2.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1-3. 조례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성별 특성	2. 조례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조례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점검.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는지 점검.

성별 통계	4. 조례와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점검.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	--

-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대부분 조례에 문제되는 조항이나 표현의 유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나 수치상의 평등이 아닌 질적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2. 성평등 목표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의 성평등 목표를 검토의 기준으로 함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라는 비전 아래 ①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②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③ 일과 생활의 균형, ④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도 포함되어 있음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상의 주요 과제와 평가 대상 조례의 해당 분야 관련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기준으로 대상 조례에 대하여 젠더 이슈 및 성평등 부합성,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함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상 주요 과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교육 강화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AA 부진 사업장에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공개 및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및 실시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 확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부·처·청’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장 내 예방·대응장치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연구소 설치 등 기념사업 추진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각 분야 관련 부처별 성평등 목표>

	남녀평등의식 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 책 추진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 단체 및 지 방공기업 성관리직 대	▶ 지방자치 단체(산하기 관 포함) 가 속 진화 경 영 정착		▶ 지방자치 단체 양성평 등 정책 추 진 기반 강 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분야 여성 인력 진출 확대 및 분 리 성 완 화 ▶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 국토 교통 분야 의사결 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 이동 약자 지원 교통서 비스 인프라 와 돌봄 인 프라 확충	▶ 대중 교통 서비스에서 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	
국방부	▶ 성 차별 근절과 인권 존중의 정훈 문화 정착으 로 군대 내 양성 평등 의 식 증진	▶ 군 인적자 원 개발의 성 별 형평성(군 장학생 및 전 직 지원 포 함)	▶ 군 간부 여성비율 확 대와 직무 분 리 완화	▶ 군 복무 여건 개선으 로 일·가정 양립 정착 ▶ 군부대 육 아 지원 시설 확대	▶ 군 조직의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 군인의 모 부성권 보장
경찰청					▶ 성폭력 피 해자 보호활 동 지원 내실 화 ▶ 강력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 책 강화 ▶ 성 폭력 에 대한 단속 수 사 실효성 제 고 및 다양한 성 폭력(사이 버 상,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 화	

제3장 분야별 대상 조례의 분석

제1절 재난안전

1. 개괄

- 재난안전 분야의 강원도 자치법규는 총 30개임
- 기준일에 시행 중인 자치법규 중 시행규칙 등 규칙, 규정 등 훈령, 예규를 제외한 21의 조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재난안전 분야의 자치법규는 세부 영역으로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 및 비상기획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 영역의 자치법규는 「재난안전기본법」 등 해당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에 의한 위임사항을 규율한 조례가 많았고, 비상기획 영역의 경우 강원도 지역적 특성상 군(軍) 관련자 또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많았음
- 재난안전 분야의 강원도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괄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자치법규명	성별영향평가항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
1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0		0
2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0		
3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4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0	0	0
6	강원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7	강원안전대상 조례				
8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9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0		
10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1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12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3	강원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0	
14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0	
15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16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0
17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18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19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지원조례				
20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1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0	

2. 재난안전 분야의 성평등 목표

(1) 재난안전 분야의 성평등 목표

- 재난안전 분야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대상으로서 관리와 대응의 표준이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위임입법이 많아 조례 역시 위임 조례가 많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안전분야의 일반법이나 그 내용에서 재난은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재난으로 인한 성별 차이에 대하여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데,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으로 보고 있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안전에 관한 분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의 재난안전 외에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거론됨
- 여성의 안전은 여성안전정책 등으로 표상되는 범죄로부터의 안정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고, 강원도 자치법규도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재난안전 분야의 조례로 분류하고 있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재난안전분야에 포함하고 있음
- 정리하면, 전통적으로 재난안전 분야에서 자연재난이나 대규모의 사회재난에서 성별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 성평등 목표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안전은 고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평등 목표가 존재함
- 범죄피해자의 경우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성폭력을 위시한 강력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 범죄에 대한 단속·수사 실효성 제고 및 다양한 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 목표가 됨

(2) 재난안전 분야의 젠더 이슈

- 재난은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재난으로 인한 성별 차이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이었음
- 그러나 성폭력 등의 범죄가 아닌 자연, 사회적 재난의 발생은 젠더 중립적이지만 그로 인한 영향, 같은 강도의 재난에 대해서도 대비 정도와 취약성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재난의 영향 정도 차이가 있고, 피해 가능성이나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성별 격차를 고려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

○ 신체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재난취약성

- 홍수,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훨씬 높고,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 등 각종 재난 재해에서 여성의 피해가 남성에 비해 크다는 점은 관련 통계를 통해 보고되고 있음³⁾
-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의 성 격차가 단순히 해당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타나기 보다는 성 평등의 현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음⁴⁾
- 성별에 따른 피해의 차이는 여성/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주로 집 안에서 가사노동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책임지는 여성의 젠더역할과 같은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점의 인지에 따라 여성과 재난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바, 2005. '효고행동계획(Hyogo Framework for Action)'에서는 조기경보와 정보관리,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는 모든 재난위기관리 정책과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젠더관점을 통합할 것을 밝히고⁵⁾, 2009. 4. 베이징 아젠다(Beijing Agenda for Global Action on Gender-Sensitive Disaster Risk Reduction)가 결의된 바 있음⁶⁾
- UN은 여성 인권의 보호와 성평등의 권장이 재난위험 감소와 회복력 구축에 중요한 부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재난 발생시에도 전통적으로 노인과 아동에 대한 돌봄역할을 맡고 있

3) 1991년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한 사망자 14만 명 중 90%가 여성이었으며, 2004년 동남 아시아 쓰나미 피해 희생자의 67%가 여성이었다. 한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성별 사망자 수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여성 사망자 수가 남성에 비해 많으며, 고령층의 여성사망자 수는 남성 사망자에 비해 압도적 다수라고 함. 강희영, 서울시 안전정책에서 젠더 관점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화젠더법학 제7권제2호, 2015, 203면

4) 강희영, 위 논문, 203면

5) 장미혜, 김학경, 송효진, 박건표, 정지연, 이진희, 재난피해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방안, 2014,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면

6) 장미혜 외, 위 보고서, 29면

는 여성은 영유아나 노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피신을 위한 신체적 능력의 열위로 인하여 더 중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바 여성을 포함한 재난취약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재난취약자를 위한 대응 계획 모색이 필요함

○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 재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정도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여성은 재난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가 부재하고, 정보 또한 부족함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재난에 대해 교육이나 정보 욕구는 높지만 재난대처능력은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재난발생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된 이유로 여성은 사전 안전 및 예방교육 미비가 34.3%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은 개인의 과오나 부주의가 32%로 가장 높았음⁷⁾
- 재난대처능력은 학습과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영역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재난역량을 향상시킬 기회가 부족하면 재난 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이나 침착하고 유연한 심리상태의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됨⁸⁾
- 게 성인지적 관점의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여성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에의 접근성이 허용되어야 함

○ 피해상황에 대한 성별분리조사의 필요성

- 재난 관련 실태 조사에서는 앞서본 재난취약성의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 재난시 여성과 남성의 피해정도의 차이나 재난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대피 및 복구 정책에서 성별에 따른 불편함이나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져야 함

7) 권정현,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 인문사회 제21권 11-6호, 2020, 12, 48면

8) 권정현, 위 논문, 49면

3.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대상 조례의 분석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조례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함
- 재난안전 분야 강원도 자치법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항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조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2) 성별 특성

-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재난안전분야 법규의 특성상 성별 특성 항목에 따른 검토는 실질적 지표로 검토가 필요함
-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성별 특성 항목에 따라 조례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조례상 정책의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재난안전 분야의 성별 특성 항목에서 조례 개선을 위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함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본 조례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 외

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등의 책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국민의 책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에 대응하는 도지사의 책무(본 조례 제3조)와 도민의 책무(본 조례 제5조)를 두는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내용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의 법률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성별 특성 항목에 따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본 조례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일반 자치법규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재난대비,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 여성을 포함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원칙으로서 선언될 필요가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제3조제9의3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특성상 여성은 신체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취약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본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으로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조례명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71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1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u>노약자,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u>

-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 본 조례는 강원도민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

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본 조례는 기초안전교육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 사고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안전교육이라고 정의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 함(제6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 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 하는 안전교육시행계획은 위 안전교육기본계획에 따라야 하지만 이와 배 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법률우위의 원칙) 안전교육실시계획의 사항을 정할 수 있음⁹⁾

• 본 조례는 강원도 조례 중에서 안전교육에 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에 여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의 기회 제공이 명시되거나 적어도 여성이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조례명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관련조항 및 개정안	현행 조항	개정안
	제4조(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도 지사는 기초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제4조(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도 지사는 기초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9)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안전교육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안전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기초안전교육 추진계획 3. 기초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인적자원 활용 방안 4.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안전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u>기초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와 유형</u> 3. 분야별 기초안전교육 추진계획 4. 기초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인적자원 활용 방안 5.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초안전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안전교육의 실시) ① <u>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기초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마련하여야 한다.</u>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 그러나 본 조례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정의 규정에는 영유아와 산모, 아동, 임산부 여성 등과 같이 재난 특히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재난유형인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빠져 있음
- 임신부, 산모, 영유아의 경우 화재시 스스로 혼자서는 또는 신속하게는 대피가 어려운 신체적 요인의 재난취약자이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원 등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로서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등의 교육시설의 피교육자,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및 이용자 등을 규정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장, 해당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해당 사회복지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제10조¹⁰⁾, 제12조¹¹⁾, 제13조¹²⁾), 위 시설은 일반적인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참고할 수 있음

- 10)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11)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2)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례명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개정안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7.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u>조산원이나 건축법령상 노유자시설</u> 9.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참고 조례>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 3.「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 지시설 4.「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 년복지시설 5.「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 시설
--	--	--

○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조례에 위임한 바는 없으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책 발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범죄자로부터가 아닌 일반 사회에서의 2차 피해나 고립을 막기 위한 방책도 요구되는바, 주민 일반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 제고와 피해자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도민의 책무가 규정될 필요가 있음

• 범죄 중 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원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와 상충 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시책이 규정될 필요가 있음

조례명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도민의 책무) <u>도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 문제임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협력한다.</u>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참고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조례」 제4조(시민의 책무)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4조(도민의 협력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3) 성별균형 참여

-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확인하였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구성 등)에서 “위촉직 위원의 100분

의 40의 범위 이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강원도 재난안전 분야 조례 중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시 여성이 배제되거나 과소대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아래와 같음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 성별 균형 관련 규정은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법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성별균형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서 두고 있지 않음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균형 관련 규정이 없음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1. 강원도교육감, 지방경찰청장, 2.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도 지역본부장, 3. 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을 뿐, 협의회는 구

성시 성별 균형 참여가 명시되지 않음. 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더라도 예외 인정조항을 포함한 성별균형 조항이 필요함

- 위원회, 협의회는 위원 구성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한 조항은 있으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아래와 같음

-「강원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원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대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협의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아래와 같음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전관리위원회)

- 강원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강원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강원안전대상 조례(안전대상공적심사위원회)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4) 성별통계

- 「양성평등기본법」은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실태조사나 통계 생산 시 반드시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재난안전 관련 실태 조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른 재난취약성이 인지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 수립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성인지적 정책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성별분리통계가 필수적임
- 재난안전분야 조례 중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는 실태조사 또는 통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분리 조사 또는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통계 수집 및 분석할 것을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함.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명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개정안	제47조(재난통계) ① 도지사는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을 할 때 활용하여야 하며, 시·군·구조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47조(재난통계) ① 도지사는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u>전항의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과 통계는 성별을 구분하여 수집 및 분석한다.</u> ③ 도지사는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을 할 때 활용하여야 하며, 시·군·구조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명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	------------------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개정안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u>전항의 실태조사는 연령, 성별, 소득 구간, 지역 등을 구분하여 조사한다.</u>

○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조례명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개정안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도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도민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도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 ② <u>전항의 실태조사는 성별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한다.</u> ③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도민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교통 분야

1. 개괄

- 건설교통 분야의 강원도 자치법규는 총 84개¹³⁾이고, 이중 시행규칙 등 규칙, 규정 등 훈령, 예규를 제외한 58개의 조례에 대하여 1차적인 분석 실시함¹⁴⁾
-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는 지역도시, 건축, 토지, 도로, 교통, 치수, 도시재생, 철도와 관련 자치법규를 포괄하고 있음. 도시계획, 건축, 도로 등 공간 계획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관련 공사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자치법규명	성별영향평가항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
1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2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0	
4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5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6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0	0	
7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0		
8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0		0
9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0		
10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0	
11	강원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0		
12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0	0	

13) 기준일:2021.05.20

14) 기본적으로 규칙, 규정, 지침을 1차 검토에서 제외하였으나, 내용상 성별 특성에 따른 관련성이 커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규칙, 규정, 지침등을 함께 검토하였음.

13	강원도 건축 조례			0	
14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0	0	
15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0	0	
16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17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18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19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20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0	
21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22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0	
23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0	
24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0		
25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0		
26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0	
27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0	0	
28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0	0	
29	강원도 주택 조례				
30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0	
31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32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33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0	
34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35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0	
36	강원도 지역축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0		
37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38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0		

39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40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41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42	강원도 도로보수원 근무 규정		0		
43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0		
44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0		
45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0		
46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47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0	
48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49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0	
50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운영 조례				
51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52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53	강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54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0		
55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56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57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0	
58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59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0	
60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0	

2. 건설교통 분야의 성평등 목표

(1) 건설교통 분야 관련 성평등 목표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건설교통 분야 관련 부처별 성평등 목표는 아래와 같음

	남녀평등의식 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분야 여성 인력 진출 확대 및 성별 분리 완화 ▶ 한부모 등을 지원 위한 주거 원 강화	▶ 국토교통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 이동 약자 지원 교통서비스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 확충	▶ 대중 교통 서비스에서 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	

(2) 건설교통 분야 젠더 이슈

- 건설 및 교통 분야는 성별과 무관하며, 성중립적이라는 시각이 만연함. 건축 및 공간 조성 관련 정책과 사업에 성평등 향상을 위해 젠더 관점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데 소극적이었음.
- 공적영역은 남성, 사적영역은 여성이라는 성별화된 공/사 이분법에 기초해 근대도시는 남성적이라고 가정된 공적영역을 여성적 사적영역과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남성중심적으로 계획, 건설됨(Hayden, 2020; 정현주, 2020 재인용). 주거와 일터를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도시의 공간배열 체계로 인해 성별화된 공간의 배치, 성별화된 여가 문화, 교통체증의 심화, 가족들의 소통 시간 감소 등 여러 문제들이 초래되어 옴(장미현, 2015)¹⁵⁾.
- 근래에 공간조성, 건축 등 관련 성인지적 연구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 그리고 공간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에서 도시, 공간 조성시 성별에 따른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동 및 공간 접근, 이용의 편의, 안전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 다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15) 장미현. (2015). 도시 · 건축공간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이화젠더법학, 7(2), 113-145.

점에 제기되어 옴. 나아가 도시 계획 및 공간 조성시 젠더 관점의 반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옴.(정현주, 2020¹⁶⁾;)

-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접근성 및 이동성, 공간성 및 편의성, 안전성, 여성참여 등이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와 관련성이 높은 젠더 이슈라고 할 수 있음.¹⁷⁾

○ 접근성 및 이동성:

공간 이동 패턴과 방식에서 여성과 남성은 다른 양상을 보임. 이는 성별에 따른 공/사구분,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한 점에서 기인함.

여성들은 가사와 돌봄 활동에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함. 이에 일상에서 가사와 돌봄 서비스 시설의 이용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가사와 돌봄을 위한 단편적인 이동이 비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장미현, 2015)¹⁸⁾

이동수단에 있어서 취업여부별, 지역별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승용차>대중교통>도보 순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도보>대중교통>승용차 순임. (최유진 외, 2013)

<강원도 성별 이용 교통 수단별 통근 인구>

	남자		여자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단일수단 이용 계	400,959		288,720	
걸어서	86,688	21.6%	101,782	35.3%
승용차 소형 승합차	262,664	65.5%	134,647	46.6%
시내·좌석·마을 버스	11,136	2.8%	29,393	10.2%
통근·통학버스	12,872	3.2%	12,418	4.3%
고속 시외 버스	1,684	0.4%	1,003	0.3%
기차	241	0.1%	129	0.0%
택시	1,975	0.5%	2,748	1.0%
자전거	4,873	1.2%	1,579	0.5%
기타	18,826	4.7%	5,021	1.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강원도의 경우 읍면부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지 않은 지역 특성상 남성 여성 모두에서 승용차 이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럼에도 여성인구 중 통근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46.6%로 남성(65.5%)에 비해 적으며, 여성인구 중 걸어서(35.3%) 통근하거나 버스를 이용(10.2)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이동시 동반자가 누구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돌봄이 필요한 자녀나 혹은 노인을 동반하는 비율이 높고, 더욱이 자녀 및 노인과 함께 공공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유아차나 보행기 등 을 동반하여 이동하기도 함.(조연숙 외, 2015)¹⁹⁾

이동에 대해서 남성은 전반적으로 교통 편리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안전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보행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임. 신체적 장애가 있는 그룹과 노약자 등과의 동반 보행 비율이 높은 여성에게는 이동 어려움이 사회 참여의 제약으로 인식되고 있음.(최유진 외, 2013)

○ 공간성 및 편의성:

19) 조연숙, 장미현, 최정선. (2015). 도시공공시설 젠더이슈에 대한 이용자 성별 수요 분석. 도시행정학보, 28(2), 27-54.

16) 정현주. (2020). 젠더 관점과 도시계획. 도시정보, (458), 36-39.

17) 아래 정리된 접근성 및 이동성, 공간성 및 편의성, 안전성, 여성참여 등 4가지 젠더 이슈는 송효진 외(2016), 『지방자치단체 조례(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참고하여 정리함.

18) 장미현. (2015). 도시 · 건축공간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이화젠더법학, 7(2), 113-145.

공공건축물과 편의시설은 다양한 시민 누구나가 이용하는 시설로 시민은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존재임.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가진 일시적, 항상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과 공간구성 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건축, 공간조성이 필요함.

공간조성 및 공간 이용에서의 성평등은 공간/건축물의 구조와 환경이 특정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게 그 이용에서 불편함이나 불리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장미현, 2013)

신체적으로 약자인 영유아, 장애인, 고령자 등의 활동과 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애 공간설계(Barrier Free)를 적용하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 관련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와 지원이 요구됨. 돌봄시설 확충시 돌봄제공자를 ‘여성’으로 가정하고 공간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영유아 돌봄을 중심으로 남성의 돌봄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제공자=여성 이라는 등식은 오랫동안 성평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영유아 동반 여성, 영유아 동반 남성 모두가 돌봄으로 인해 공간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공간조성시 성역할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돌봄시설 마련이 필요함

○ 안전성:

성인지적 관점에서 안전한 도시·건축공간이란 모든/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건축공간을 두려움 없이 이동, 접근,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장미현, 2015)

도시공간의 생활 전반에서 여성은 남정보다 안전에 대해 민감성이 높음.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인식을 성별로 살펴보면 2018년 15세 이상 여성 인구의 46.7%가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 인구는 25.7% 임.(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분석²⁰⁾, 2018) 또한, 여성들은 야간 보행의 두려움으로 인해 주로 ‘(이동을) 다음 기회로 미루거나, 피해 다니거나, 아는 사람과 동행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공간에서 불안감, 시간대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해 공간 이용의 제약이 발생함을 의미하므로 성평등한 공간조성에서 안전하지 못한 공간환경의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함.(장미현, 2015)

○ 여성참여:

우선, 건설 및 도시공간 조성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측면에서 보면, 다른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는 실정임. 건설·교통 분야는 오랫동안 남성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관련 공무원, 교수, 건축사, 관련 기술자 등 전문가에 남성의 비율이 높음.

또한, 여성 참여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음.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을 통해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집단이 도시를 공평하게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최유진, 2013)

20) https://gsis.kwdi.re.kr/gsis/kr/tblInfo/TblInfoList.html?vw_cd=MT_ZTITLE

3.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대상 조례의 분석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조례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취업 지원, 우선 고용에서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이 배제된 조항이 있어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것인지 분석함
- 건설·교통 분야 강원도 자치법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항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조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2) 성별 특성

-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성별 특성 항목에 따라 조례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조례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건설·교통 분야의 성별 특성 항목에서 조례 개선을 위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함.

① 도시계획 및 공간조성 기본방향에 공간 조성 관련 성평등 이슈 반영

- 도시 공간은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곳임. 주민들은 사회문화적,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공간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점들이 다를 수 있음. 즉, 도시, 공간 조성시 성별을 포함하여 주민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동 및 공간 접근, 이용의 편의, 안전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므로 도시 계획 및 공간 조성시 젠더 관점의 반영과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서 도시계획 수립과 집행의 기본방향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조성시 주요 젠더 이슈인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없어 주민에 따른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의 특성을 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못함.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성별 특성 및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조례명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u>성별, 연령, 장애 등 다양한 요소를 배려하고 도시의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한</u>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② 성별특성을 포함하여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 건설, 공간조성 관련 계획 수립 및 설계 필요
- 건축, 건설 등 공간 조성 관련 계획은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의 차원에서 주민 및 공간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주민 및 이용자는 사회문화적, 신체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들이 다룰 수 있음. 따라서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주민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고 반영되어 건축, 건설, 공간조성 계획이 수립되고 설계의 지침의 만드는 것이 중요함.
-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중 계획 수립 및 설계시에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자치법규는 아래와 같음.
-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며, 제5조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음. 활성화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는 항목 추가가 필요함.

조례명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전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u>활성화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도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u>

- 「강원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본 지침은 강원도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지침임. 【별표 4】는 설계용역평가의 세부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설계용역 세부평가기준에 ‘주민의 다양한 특성(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한 설계 반영 검토’ 반영 필요.
-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 본 조례는 「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함. 조례 4조에서 건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5조에서 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건축 기본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건축 기본계획 내용에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및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고른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조례명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4조(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의회 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건축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강원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건축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u>

<신설>		
	제5조(건축 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농산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12. 생략	제5조(건축 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농산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u>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u> 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u>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u> 고른 주민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0~13. <u>현행과 같음</u>

○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본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는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19조는 제5조에 따른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시설물 설치 시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장애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필요. 또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시에도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또한, [별표]에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공공성과 심미성’ 뿐만아니라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할 있음.

조례명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계획수립시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u> ④ ~ ⑤ <u>현행과 같음.</u>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u>전항의 가이드라인 수립시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고,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생략)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생략)
--	---

○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본 조례는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제3조)와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제5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5년마다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와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 있음.

조례명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u>

○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본 조례는 강원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

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제3조),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제5조), 및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지원(제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연령, 성별, 가구구성, 장애정도 등 입주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요구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에 이러한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입주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명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행계획을 수립시 연령, 성별, 장애정도, 가구구성 등 입주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u>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입주자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 추진시에는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u>

○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본 조례 강원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주거종합계획(제2장)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제3장) 설치, 주거복지센터(제4장)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계획수립 시에 각각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주거 안정 정도와 주거수준 등은 도민의 성별, 연령, 장애정도, 가구구성 등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들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명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 가구구성,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 도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본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안전 의무 준수 등 도민의 참여와 협력(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제 6,7조), 지침마련(제8조), 안전교육(제9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도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시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또한, ②항에서 계획 수립시 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도민의 의견 수렴시 성별, 연령, 지역, 장애정도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명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u>성별,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제3조), 광역이동지원센터(제5조, 제6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제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교육 홍보)에서는 연간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에 포함될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4목), 장애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5목)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사항들은 2021년 4월 9일 조례개정시 신설되었음.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에서는 5년 단위의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약자 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례명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계획을 수립시에는 교통약자의

여 5년 단위의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간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4.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정보제공 사항 5. 인접 광역자치단체로 간 이동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 관계 전문가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유형,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 관계 전문가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유형,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강원도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제3조), 이용대상자(제5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에는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강원도지사가 수립할 것과 도비 지원을 받은 시장·군수는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는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여성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을 동반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아동 및 노인과 함께 이동할 때 유아차나 보행기 등을 동반하기도 함. 또한, 여성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은 점은 교통 복지의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함. 따라서 희망택시 운영 계획 수립시 이동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정도, 거주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조례명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수립한 운영계획에는 운행방법, 희망택시 운행요금의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성별, 연령, 장애정도, 거주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시공간 조성시 성별특성 및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 수렴하고, 주민참여 확대

○ 도시 공간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들이 거주, 이동하며 활동하는 공간임. 따라서 도시공간 조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증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주민은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견 수렴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 명시될 필요성이 있음.

○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제3조), 광역이동지원센터(제5조, 제6조), 특별교통수단(제7조), 저장버스(제8조, 제9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는 5년 단위로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민은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하는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 있음. 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에서 지원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됨. 추가적으로 유형별(명시 나열) 교통약자 및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주민 의견 수렴으로 개선.

조례명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간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 관계 전문가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u>이 때, 연령,</u>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4.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정보제공 사항 5. 인접 광역자치단체로 간 이동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 관계 전문가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u>성별, 장애 유무와 정도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u>
---	---

○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도시재생위원회(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제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제5조, 제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는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할 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고 있음. 도시재생이라는 도시공간 조성에 있어 그 곳에 거주, 이동, 생활하는 주민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계획 승인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사항을 계획안 서류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조례명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5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	제5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4. 시·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4. 시·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u>5. 연령, 성별, 장애 유무와 정도 등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u> <u>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u>
--	---

④ 건설·교통 분야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지원 필요

○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중에 건설·교통 산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있음. 이들 자치법규는 지역 산업의 활성화 및 종사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임. 건설분야는 여성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로 남성종사가 우세한 분야임. 2020년 2분기 건설업 취업자 중 남성은 1,876,000명, 여성은 199,300명으로 남성이 전체 건설업 취업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관리자의 98.8%가 남성이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97.1%가 남성이고,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에 종사하는 사람의 99.4%가 남성인 반면, 사무종사자의 46.3%가 여성이고, 서비스 종사자의 41.7%가 여성임(통계청, 2020 지역별고용조사). 즉, 관리업무와 현장관련 업무의 남성종사가 지배적이고, 여성은 주로 사무업무 및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특성이 있음. 또한, 여성은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현장업무는 여성이 못한다’와 같이 변하지 않는 업계의 성별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취업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건설업에

진입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여성인력 역량강화 및 성인직적이고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가운데 성평등하고 안전한 고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아래와 같음.

○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본 조례는 강원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제3조의3),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내 생산품·장비·인력 사용 권장(제4조의3, 제4조의4), 지역건설근로자 우선(제4조의6.6.8),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제5조) 등의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제3조(도의 책무) 2항에서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불필요한 개발사업 남용이 우려되므로 항목삭제나 변경이 필요.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활성화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건설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고용환경 조성, 역량강화 및 인력 확충 등은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활성화 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함.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은 도지사가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때, 여성고용을 꺼리는 건설업분야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건설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는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노동자는 지역건설산업의 일원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 있음.

조례명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 3.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4.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의 내용과 추진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 3.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4.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u>5. 평등하고 안전한 고용환경 조성 및 건설노동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u>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도지사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u>① 도지사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여성건설노동자 고용 촉진을 지원해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5. 7. 24, 2015. 10.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11.12>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0.11.12., 2019.11.8.>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11.12>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0.11.12., 2019.11.8.>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도 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 는 사람<개정 2010.11.12>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0.11.12>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0.11.12>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 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 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신설 2017.12.29.>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0.11.12.> 6. 건설관련 노동자를 대표하거나 건 설관련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	--

○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본 조례는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
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
는 조례로, 적용대상(제3조), 사업주의 책무(제4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제5조), 대가지급 예고(제6조), 신고센터운영(제7조) 등에 관한 사항
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는 제4조(사업주의 책무)에서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
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
음. 특히, 3항에서 사업주가 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임금지급서약서를 발
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노동자의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서는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지급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안전하고 폭력이
없는 노동환경 조성과 그 외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 역시 중
요하므로, 임금지급서약서 외에 노동자 권익보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음.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
는 건설현장이 되도록 권익보호 서약서에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조례 제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은 사업주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
시하고 있음. 여성고용을 꺼리는 건설업분야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기 위
해 고용시 여성건설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분명히 할 필
요성이 있음.

조례명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 위 생관리용역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 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공사· 용역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별 지 1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임금청구확인 서(별지 2호)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별지 3호, 이하 “확인서”라 한 다)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 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명단, 연락 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공사· 용역 계약체결 시 <u>임금지급서약서(별 지 1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서약서*</u>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사업주는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 극 노력한다. <개정 2020.5.15.>	제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시 여성 건설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 야 한다.</u>

기타	* 노동자 권익보호 서약서에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금지 조항 포함.
----	---

○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본 조례는 강원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 추진(제3조),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참여 지원(제5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역인재 우선고용(제7조), 지역측량산업체 범위에 대한 특례(제9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 제7조(지역인재 우선고용)는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수 300명 이상 측량산업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건설 토목 측량 분야 산업 취업자의 오래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 여성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여성지역인재 채용 권장에 관한 조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조례 제9조(지역측량산업체 범위에 대한 특례)는 측량산업체의 지점이 도내에 소재하고 상시노동자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 3년 이상 거주 강원도민 또는 지역인재로 구성하는 측량업체는 지역측량산업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측량산업체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 지역측량산업특례업체 지정 신청서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는 상시근로자 현황을 지역인재와 타지역 연고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설, 토목, 측량 분야의 오래된 성별 불균형 개선과 여성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여성지역인재 고용현황 파악이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성별을 분리하여 상시근로자수 현황을 작성하도록 서식을 변경할 필요 있음.

조례명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7조(지역인재 우선고용) ① 도지사는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측량산업체는 신규 채용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7조(지역인재 우선고용) ① 도지사는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지역인재 고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상시근로자 현황을 성별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서식 변경

○ 「강원도 도로보수원 근무 규정」

: 본 조례는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강원도 소속기관의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근무지배치(제3조), 임무 및 의무(제5조), 근무시간(제6조), 근무요령(제7조), 교육(제9조) 등의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본 규정에는 도로보수원의 임무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된 반면 도로보수원 근무 중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부재함. 노동자의 안전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은 사용자의 의무이자 도로보수원 근무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근무 규정에 명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함.

조례명	강원도 도로보수원 근무 규정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9조(교육) 소속기관장은 월 1회 이상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과 부패방지를 위	제9조(교육) 소속기관장은 월 1회 이상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도로보수원의 안전배려의무) 소 속기관장은 도로보수원이 도로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고 등의 위험이 없는지 수시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안전배려의 의무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범위 안에서 바뀔 수 있음)

⑤ 공간조성시 안전성 고려 강화 및 성별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수립 필요

- 도시공간 계획수립과 조성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 등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에 관련된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히, 안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은 주민 및 이용자의 사회문화적,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 주민의 다양한 특성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시 반드시 고려될 필요 있음.

○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 본 조례는 강원도를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경관사업의 대상(제8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제3조의 3), 경관계획의 내용(제4조) 등의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제3조의3(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제안서에 포함될 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있음. 경관계획제안서에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와 평가는 이용자들의 특성과 관련한 조사와 평가를 포괄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할 경관계획 내용은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련 대책을 포함해야 함. 또한, 도시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항에 도지사가 검토할 사항으로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을 고려

한 안전 적합도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은 경관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에서 경관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제3조의3에서 경관계획 내용에 안전 관련 대책이 포함될 필요성이 큰 만큼, 제4조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 52조1항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범죄예방 공간(도시환경)디자인 계획이 경관계획 수립시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

조례명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3조의3(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안전 적합도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안전 적합도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④ 현행과 같음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1]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7.11>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한. 연령, 성별, 장애정도 등 특성을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강원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고려한 안전계획</u>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u>5. 범죄예방 공간(도시환경)디자인 계획</u> 6.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강원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⑥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및 정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주민은 성별, 연령, 장애정도, 주거형태 등 그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이 다를 수 있음. 예를들어 양육할 유아나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육아 시설 등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쉴 휴게시설이 필요하지만, 연령층에 따라 필요한 세부 기능이 다를 수 있음. 또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도 거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설치와 개선이 필요함.

-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본 조례는 강원도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시행계획 수립(제5조), 위원회구성(제6조), 시설개선사업 지원(제7조), 입주자 지원(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는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은 입주자의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다양한 일상

활동에 필요한 복리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예산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개선사업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조례명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개정안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선사업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주민공동체 활동 및 복리시설(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공동보육시설 등) 설치 및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선사업

⑦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 강화 및 보행안전 관련 신규 조례 제정 필요

- 이동성 및 안전성은 지역 공간과 관련된 주요 의제 중의 하나임. 강원도 조례 중 지역 주민의 이동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등으로 주로 “교통수단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음. 지역 주민의 이동과 관련된 안전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부터의 안전”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지역사회 이동의 패턴을 보면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동방식과

동행자 여부 등에 차이를 보임. 여성과 아동, 노인은 보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아동이나 노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한 조항이 있으나 이는 도로 상의 공사 시행(제8조)의 경우에 한정된 규정임. 이에 지역 주민의 이동 안전성 증진을 위해서는 “보행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와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될 필요 있음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신규 제정 조례안의 제안은 아래와 같고 관련 내용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²¹⁾는 별지와 같음

조례명	강원도 보행안전에 관한 조례(가칭)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개정안	없음 (신규조례 제정 제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21) 보령시, 김천시, 안성시, 청양군, 산청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등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으로 보행안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아산시 등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으로 조례를 두고 있는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조례를 참고조례로서 별지로 첨부함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5.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도로표지판 나. 가로등 다. 교통신호등 라. 교통표지판 마. 전신주 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행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④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보행환경 개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내에 위치한 「도로법」제8조의 도로 중 보행자길이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4.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다리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구도심지, 낙후지역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횡단보도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도지사는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	--	---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시·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강원도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7조의 보행안전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본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교통안전 시책 수립에 대한 도와 시·군의 책무(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4조, 제5조), 교통안전교육(제6조), 보조금(제7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1호에서 “교통안전”을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지역 주민의 이동과 관련된 안전의 증진을 “교통사고로 부터의 안전”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포괄할 수 없으므로 보행안전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함.

○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제3조), 도로관리 및 사고관리체계(제4조, 제5조), 공사시행시 교통관리대책(제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보행권 보장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제8조(도로 상의 공사 시행)는 도로에서의 공사나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보행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2항의 교통관리대책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이 포함될 필요 있음.

조례명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8조(도로 상의 공사 시행) ① 도로에서의 공사나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	제8조(도로 상의 공사 시행)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 4. <u>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u>

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의 내용·검토사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의 내용·검토사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⑧ 생활이동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 설치

○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임.

○ 자전거 이용은 여가목적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 이동수단으로도 이용됨. 일상생활의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지 인근 시장, 마트,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간의 이동이나 통근에 주로 사용됨.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함.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 활용을 보편화,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 관련 인프라 구축은 자전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초가 됨. 일상생활 이동에 자전거 사용의 확대가 자전거 사용 활성화에 중요한 만큼, 주거지 주변, 전통시장, 대형 마트,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연결되도록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에 편의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조례명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개정안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과 자전거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과 자전거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단지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개정 2015.10.30.>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1. 단지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개정 2015.10.30.> <u>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전통시장 등과의 연계방안</u> 3.~4. 현행과 같음.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8.5.> ② 자전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5.10.30.>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u>도지사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지하철, 전통시장 등</u>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 설치 수요 파악을 위해 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⑨ 교통 약자 안전시설 및 사업

○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 본 조례는 시·군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제4조), 지원사업 신청(제5조), 지원 순위 및 지원 결정(제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는 강원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영유아나 고령자를 동반하는 운전자의 경우 유아차,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 이동보조 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필요성도 높음. 차에서 내려 이동보조 수단으로 옮겨타기 위해서,

또한 동행인의 부축을 위해서는 주차공간 폭이 기존보다 넓어야 하고, 출입구 및 승강기와 인접한 곳에 주차공간이 마련될 필요 있음. 이러한 배려주차 공간 확보는 주민의 안전한 이동성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보조금 지원 사업에 포함할 필요 있음.

		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 차장 설치사업
--	--	---

조례명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개정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70%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인 읍·면·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3.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4.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5.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3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70%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인 읍·면·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3.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4.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5.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6. <u>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u>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3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

(3) 성별균형 참여

-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확인하였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위원구성 등)에서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이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조례 중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시 여성이 배제되거나 과소대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아래와 같음
 -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²²⁾
 -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에도 성별 균형을 고려한 구성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협의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아래와 같음

- 강원도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운영 조례
-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 강원도 건축 조례
-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 위원회, 협의회 의원 구성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으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조례

-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조항은 위원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조항에 협의체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가 명시되지 않음.

(4) 성별통계

○ 「양성평등기본법」은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실태조사나 통계 생산 시 반드시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교통분야 조례중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분리통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시 성별을 고려하여 통계 수집 및 분석 할 것을 명시하는 항목이 필요함.

조례명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3조의4(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의 현황 및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산업자	제3조의4(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의 현황 및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u>지역건설산업 현황 파악시 인력현황 등은 성별을 구분하여 수집 및 분석한다.</u>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8.]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8.]
--	--	--

제3절 소방

1. 개괄

- 기준일에 시행 중인 소방 분야의 강원도 자치법규는 총 22개임
- 위 자치법규 중 시행규칙 등 규칙, 규정 등 훈령, 예규를 제외한 14개의 조례에 대하여 1차적인 분석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규칙, 규정, 지침을 1차 검토에서 제외하였으나, 내용상 성별 특성에 따른 관련성이 커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규칙, 규정, 지침등을 함께 검토하였음.
- 소방 분야의 자치법규는 소방행정, 예방안전, 방호구조, 소방장비회계,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로 분야가 세분되어 있음
- 소방 분야의 분석 대상 조례에 대한 개괄적인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자치법규명	성별영향평가항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
1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0		0
3	강원도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4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조례				
5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6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0	
7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8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9	강원도 화재예방조례				
10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11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0		0	

13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0			
14	강원도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15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소방 분야의 성평등 목표

(1) 소방 분야의 성평등 목표

- 소방 분야는 재난관리체계의 한 부분으로 재난대응과 수습의 역할에 집중되는 행정분야이고, 특히 구조·구난업무를 중점적으로 분야이고, 재난안전분야의 한 지류로서 재난안전분야와 마찬가지로 성별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임
-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은 별도의 성평등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방 분야는 전통적으로 고유의 영역인 화재진압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인해 소방 분야의 행위 주체는 재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재난을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남성으로 인식되어 대표적인 성별 고정관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임
- 실제로 소방 분야에서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입 단계에서부터 남성 중심의 선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여성과 남성의 분리 모집·선발하거나, 일부 직무 분야에서는 현장 활동 특성 고려를 이유로 남성만 모집하여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2020. 10. 여성가족부가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하였음²³⁾
- 소방 분야에서의 여성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실정과 업무 특성상 여성 소방공무원의 승진이 어려운 유리천장이 지적되었는데, 2018년 3월 소방청은 2022년까지 시·도별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을 전체 5%까지 늘리고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정책을 포함하는 등 여성 소방공무원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골자의 '여성 소방공무원 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2) 소방 분야의 젠더 이슈

- 성평등한 채용 기준
 - 소방 분야에서는 양성평등한 채용이 문제되는바, 여성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부터는 체력검증기준 등 그 채용조건이 문제 되고 있음
 - 소방 분야의 특성상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채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화재진압, 소방차량의 관리 및 운행,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인명구조, 긴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장비 관리 및 유지 등 소방 업무의 내용이 모두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활동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절대체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여성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그러나 신체적·체력적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에서 바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정당한 근거 즉, '특정한 성별이어야 할 것'이 곧바로 소방공무원 업무수행의 필수웰 자격요건이 된다는 논거가 도출될 수는 없음
 - 강인한 신체적·체력적 조건은 소방업무를 하려고 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설정 및 객관적인 측정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으로 여성들보다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들이 많은 현상을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반드시 남성들만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는 업무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을 성별에 따라 구분모집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분모집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자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별에 따른 분리모집을 중지하고 양성에게 평등한 채용시험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국가인권위원회결정 05진차430)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소방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기준 및 필요한 체력 조건은 성별의 구분을 떠나 남성뿐 아니라 여

23)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77>

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안위와 생명의 보호 그리고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체력평가 기준이 여성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바, 여성에게 체력평가 기준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국민 전체의 복리관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분모집제도가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식의 구분모집이 계속된다면, 비록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게 되거나 소방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절대적 체력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조직 내부에서 도태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도 여성 소방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남성 소방공무원들, 나아가 적절한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3.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대상 조례의 분석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조례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채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다소 배제된 조항이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것인지 분석함
- 소방 분야 강원도 자치법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항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조례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발견됨
-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²⁴⁾, 의용소방대원의 정원 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본 조례는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정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정원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특성상 남성의용소방대원이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댄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시정이 필요함

조례명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조항 및 개정안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 : <u>남성 50명, 여성 40명</u> , 지역 20명 2. 면 : <u>남성 30명, 여성 25명</u> , 지역 20명 ②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혼성의용소방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 : <u>남성 50명, 여성 50명</u> , 지역 20명 2. 면 : <u>남성 30명, 여성 30명</u> , 지역 20명 ② 현행과 같음

24)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60명 이내
2. 시·읍: 60명 이내
3. 면: 50명 이내
4.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혼성의용소방대 : 시·읍 60명, 면 30명 2. 전문의용소방대 : 시·읍 50명, 면 30명 <개정 2017.12.29.>	
--	---	--

○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율하면서 의용소방대원 용어 사용에 있어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남성만이 아님에도 남성의용소방대원을 원칙적인 대상으로 상정하고 여성의용서방대원과 지역의용소방대원은 특별히 포함되는 대상인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조례명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관련조항 및 개정안	현행 조항	개정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3년이상 (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의용소방대원(여성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녀(이하 "특기자"라 한다) 3. 모범대원의 자녀중 소방서장이 추천한 자녀 4.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한 의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3년이상 (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녀(이하 "특기자"라 한다) 3. 모범대원의 자녀중 소방서장이 추천한 자녀 4.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한 의용

	소방대원의 자녀. 다만, 이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3년 이상 근속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10.>	소방대원의 3년 이상 근속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녀를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녀를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2) 성별 특성

○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성별 특성 항목에 따라 조례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조례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소방 분야의 성별 특성 항목에서 조례 개선을 위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함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건강진단의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 원칙이 필요함

조례명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관련조항 및 개정안	현행 조항	개정안
	제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도지사는	제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①도지사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때 <u>성별, 연령,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② 도지사는 전항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	--	--

(3) 성별균형 참여

-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확인하였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위원구성 등)에서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이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강원도 소방 분야의 조례 중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시 여성이 배제되거나 과소대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아래와 같음
 -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의 수만 규정하고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제8조)

- 위원회, 협의회 의원 구성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으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다음과 같음

-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만 하고 있음

-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협의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아래와 같음

-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손실보상심의위원회)

(4) 성별통계

- 「양성평등기본법」은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실태조사나 통계 생산 시 반드시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제6조), 이에 대한 성별분리조사가 필요함

조례명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	------------------------

제5장 결론 및 제언

	현행 조항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u>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u> ④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020. 12. 여성가족부 발표 지역성평등보고서 상 강원도의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안전 분야의 경우 2014년에는 3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분야임에도 지속적으로 그 순위가 하락하여 하위권이 되었다는 점은 재난상황의 증가와 안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고취에 비추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임
- 이에 안전 분야에 속하는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분야의 강원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은 시의적으로 필요하였다고 사료됨
- 구체적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령과 성별영향평가법령을 근거로 하여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강원도 안전 분야 자치법규에 대해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항목에 따라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가,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보장하는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을 조성하는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가 등의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고, 안전분야의 젠더 이슈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음
- 재난안전 분야의 조례는 여성의 재난취약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 여성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를 집중하여 검토하였고, 여성이 재난에 취약한 이유가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도과하여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이상 없고, 군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 등 안전대피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회가 부족한 여성이 기초안전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개선 과제로 삼았음. 또한 사회적 안전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민의 책무도 선언할 것을 제안하였음

- 건설교통 분야는 최근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건물 및 도시공간의 활용과 배치에서의 여성친화성이나 여성과 아동의 교통 편의성 및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성 및 이동성, 공간성 및 편의성, 안전성, 여성참여 등 건설교통 분야의 젠더이슈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이에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성별 특성 항목에서 도시계획 및 공간조성의 기본방향에서 성평등 이슈를 반영하거나 건축, 건설, 공간조성 관련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다양한 주민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거나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하거나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및 성별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거나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조례를 발견하여 지적하였음
-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보행자의 보행안전 보장을 위하여 신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을 발견하고 이를 제안하였음
- 소방 분야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소방공무원의 역할 고정 관념으로 이와 관련된 개선 과제가 검토되었음
- 안전 관련 분야의 전체 자치법규에서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항목에 관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례를 검토하였는데, 성별 균형 항목과 관련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성별 균형에 대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전히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조례가 있어 검토하였음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2018).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위한 안내서.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강희영(2015), “서울시 안전정책에서 젠더 관점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화젠더법학 제7권제2호
- 장미혜, 김학경, 송효진, 박건표, 정지연, 이진희(2014), “재난피해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권정현(2020),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 인문사회 제21권제11-6호
- 정현주. (2020). “젠더 관점과 도시계획”, 도시정보(458)
- 송효진 외(2016), “지방자치단체 조례(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장미현. (2015), “도시 · 건축공간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이화젠더법학” 제7권제2호
- 조연숙, 장미현, 최정선(2015). “도시공공시설 젠더이슈에 대한 이용자 성별 수요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28권제2호
- 진양명숙(2014). “젠더 관점에서 본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과정과 그 특성”. 농촌경제 제37권제3호
- 구미영(2020). “성별 임금격차 OECD 최대, 성평등 공시제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http://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columnDetail.do?jsessionid=EE9D62A233E8B80E4EC34C900BDE8D84.node20?articleId=116>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OECD, <https://stats.oecd.org/>.

<별지 1>

검토 대상 자치법규 목록²⁵⁾

I. 제4편 재난안전 분야

제1장 재난예방

1.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2.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3.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4.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6. 강원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7. 강원안전대상 조례
8. 강원안전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2장 재난대응

1. 강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3.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5.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6. 강원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7.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8. 강원도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9. 강원도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운용 규정
10. 강원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3장 재난복구

1.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2.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3.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장 비상기획

1.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2.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3.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4.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지원조례
5.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6.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7.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8. 강원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9. 강원도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규정

II. 제13편 건설교통

제1장 지역도시

1.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2.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4.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5.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6.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7.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8.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9.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10.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11.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 규정
13. 강원도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 규정
14. 강원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15. 강원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제2장 건축

1.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2. 강원도 건축 조례
3.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4.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5.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7.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8.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9.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10.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25) 2021. 5. 20.기준 시행 중인 자치법규

11.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12.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3.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14.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15.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16.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7.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18.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19. 강원도 주택 조례
20.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21.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22.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23.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24.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5.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26.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27.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권장 요령
28.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 지침
29. 강원도 경관형성 심의·운영 지침
30.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지침

제3장 토지

1.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2.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3.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4.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5. 강원도 지역축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6.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 강원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9.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10.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지침

제4장 도로

1.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3.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4.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5.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6.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 강원도 도로보수원 근무 규정
8. 강원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 보상업무처리 지침
9. 강원도 도로편입(국도·지방도) 체불용지보상 지침

제5장 교통

1.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3.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4.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5.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6.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7.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8.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운영 조례
9.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10.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1. 강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12.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13.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14.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16.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7. 강원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장 치수

1.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 강원도 도유폐천부지 관리 규정

제7장 도시재생

1.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장 철도과

1.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Ⅲ. 제15편 소방

제1장 소방행정

1.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3.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5. 강원도 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2장 소방장비회계

1.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장 예방안전

1.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조례
2.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4.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5.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6. 강원도 화재예방조례

제4장 방호구조

1.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4.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5. 강원도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6.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7.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장 소방감사담당관

제6장 종합상황실

1. 강원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설치 및 운영규칙
2. 강원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장 특수구조

1. 강원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별지 2>

개선 대상 조례 목록

	자치법규명	성별영향평가항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
1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0		0
2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0		
3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0	0	0
4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0		
5	강원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0	
6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0	
7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0
8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0	
9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0	
10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0	0	
11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0		
12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0		0
13	강원도 채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0		
14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0	
15	강원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0		
16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0	0	
17	강원도 건축 조례			0	

18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0	0	
19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0	0	
20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0	
21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0	
22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0	
23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0	
24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0		
25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0		
26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0	
27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0	0	
28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		0	0	
29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0	
30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0	
31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0	
32	강원도 지역축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0		
33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34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0		
35	강원도 도로보수원 근무 규정		0		
36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0		
37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0		
38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0		
39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0	
40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0	
41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0		
42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43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0	

44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0	
45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0	
46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조례		0		0
47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0	
48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0		0	
49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0			

<별지3>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3-11 조례 제 4234호
(일부개정) 2021-05-14 조례 제 49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5.14.>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5.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1.5.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반주민과 보행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② 도지사는 시·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21.5.14.>

1. 문화, 역사,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5.14.>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행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④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1.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내에 위치한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중 보행자길이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4.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다리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구도심지, 낙후지역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횡단보도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도지사는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시·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14.>

② 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7조의 보행안전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5.14.>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5.1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